

【 5 】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9. 14.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98. 8.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종전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전문위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만 지휘·감독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 전문위원 관련규정을 의회사무기구 관련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원에 관한 조례를 1개 조례(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 되어 조정코자 함.

□ 주요골자

가. 의회사무기구 및 직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의회사무과장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문위원의 임무와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

(안 제5조)

마.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둈다.

②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주군의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자제12200-292
보존기간	10년

1998. 8. 28

機構定員規程改正令 施行指針

기구정원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니 조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
하고 동시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조직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

-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부장, 과(科)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또는 축산연구관으로 보하도록 직급기준을 정함
 - 현재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운영하되 현직자 퇴임시에는 연구직으로 보임
-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되어 있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봄

⑧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지방의회의 일반적사무에 대해서만 의회사무국장·사무과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
-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음
- 의회사무기구관련조례에 「전문위원」 관련 규정신설 필요

⑨ 시도 공보관의 경우 별정직 임명이 가능토록 마련

- 민선 시·도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여 외부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유치가 가능토록 조치
- 따라서 별정직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규칙에 반영 후 시행

제10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의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1조제1항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농촌진흥원장소속 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를 “농업기술원장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등조제2항중 “농촌지도소”를 각각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농촌진흥원에 지도국·시험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촌지도소에”를 “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로 하며, 동조제6항 전단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 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

<p><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p><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p><u>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 농촌지도사업 · 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여 <u>농촌진흥원</u>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u>농촌진흥원장소속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u></u></p>	<p><u>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기술원장소속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u></p>
<p><u>②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소속하여 <u>농촌</u></u></p>	<p><u>②</u></p>

문서번호	자제12200-322
보존기간	10년

1998. 9. 8

機構・定員關聯 條例・規則모델(案)

行政自治部

○○시군조례 제○호

○○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국(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과)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시군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